

2024년 상반기 미화·경비직 공개채용 모집공고

“깨끗한 지하철로 시민에게 기분 좋은 하루를” 열어가는 「㈜서울메트로환경」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I 채용 개요

□ 모집인원 등

고용형태	모집직군	모집분야	모집인원(명)	연봉수준 (세전 기준)	근무형태	근무지
정규직	미화직	사원	76	2,800만원 이상	통상, 교대근무 등	서울교통공사 1~4호선 역사 및 차량기지, 청사, 잠실광역환승센터 등
	경비직 (일반경비)	경비원	5	3,200만원 이상	3조 2교대	서울교통공사 1~8호선 차량기지, 청사, 잠실광역환승센터 등
	경비직 (특수경비)	경비원	1	2,900만원 이상	통상	서울교통공사 1~8호선 차량기지, 청사 등
계			82		-	

※ 하나의 모집분야만 지원 가능(중복지원 금지),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

※ 미화직 근무형태 선택 지원 불가

※ 회사 규정에 따라 근무지 및 근무형태는 배치 및 전보될 수 있음

○ 모집분야별 수행업무

모집분야	담당업무
미화사원	미화업무(화장실 청소, 왁스 청소, 전동차 외관 청소 등) ※ 성별에 따른 미화업무 구분 없음
경비원	출입자 통제, 순찰, 보안 등 경비업무

□ 응시자격

구 분		내 용	
공통 응시자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력, 전공, 성별 : 제한 없음 · 공고일 기준 회사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· 교대근무 가능자 ·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- 군복무 중인 자는 임용 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로 한정하며, 단계별 전형응시 및 임용에 필요한 교육 참석이 가능해야 함 	
분야별 응시자격	미화직	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고 시작일 기준 만40세 이상 65세(정년) 미만자 중 1959.1.1.~1984.3.8. 출생자
	경비직	일반경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고 시작일 기준 만18세 이상 65세(정년) 미만자 중 1959.1.1.~2006.3.8. 출생자 · 경비업법 제10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
		특수경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60세(정년) 미만자 중 1964.1.1.~2006.3.8. 출생자 · 경비업법 제10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 ·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.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.8 이상

※ 근무지는 서울메트로환경 사업장 및 회사규정에서 지정하는 장소이며 업무 필요성에 따라 야간근무 가능

○ 회사 채용결격사유(인사규정 제14조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, 공공 횡령·유용 및 금품·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
9.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판명된 자
10.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로서 퇴직일(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)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1. 형법 제303조 또는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,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,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)

- 가.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『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13.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14. 『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15.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※ 채용결격사유 기준일은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함

○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(경비업법 제10조)
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.

1.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날 또는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가. 「형법」 제114조의 죄
 - 나.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죄
 - 다. 「형법」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, 제305조, 제305조의2의 죄
 - 라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의 죄
 - 마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8조의 죄
 - 바.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가.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
 - 나.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
7.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.

1.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
2. 심신상실자,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
3.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5.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

□ 우대사항

구분	대상자	적용가점
법정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산대상: 다음 각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·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·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·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· 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·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· 가산점 부여 조건 및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접수 마감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(등록)한 경우에 한함 · 가점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보훈처 발급)로 확인 · 증명서 발급 시, 제출처는 (주)서울메트로환경으로 기재 · 증명서는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에 한해 인정 	전형단계별 만점의 5% 또는 10%

※ 가점 합격을 상한제(30%) 적용,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불가
단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

II 채용절차



III 전형단계별 세부내용

○ 서류전형(1차 전형) :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

- 적격자 체력검정 실시, 입사지원서는 면접 시 활용

※ 단, 작성 불성실자*는 응시자격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

* 작성 불성실자 :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·내용 반복 기재 등

○ 체력검정(2차 전형)

- 검정종목 : 줄넘기(70점) + 앉았다 일어서기(30점)

① 줄넘기

· 5분 동안 최대 3회 실시

· 3회 실시 중 최다 횟수로 점수 부여(※각 회차별 횟수를 합산하지 않음)

구분	불합격	횃수별 점수				
		151~160	161~170	171~180	181~190	191~200
횃수	150회 이하					
점수	0	21~30	31~40	41~50	51~60	61~70

② 앉았다 일어서기: 1분 동안 시행 횃수 채점

구분	불합격	횃수별 점수	
		21 ~ 30	31 ~ 40
횃수	20회 이하		
점수	0	11 ~ 20	21 ~ 30

- 합격기준

- 합격배수(고득점 순): 분야별 모집인원의 3배수
- 커트라인 동점자 전원 합격
- 체력검정 점수(가점 포함)가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

○ 면접전형(3차 전형)

- 면접전형 대상자 : 체력검정 합격자
-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배점구분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	20~17	16~13	12~9	8~6	5~1
①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업의식		20~17	16~13	12~9	8~6	5~1
②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		20~17	16~13	12~9	8~6	5~1
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		20~17	16~13	12~9	8~6	5~1
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		20~17	16~13	12~9	8~6	5~1
⑤ 창의력·의지력 및 자기개발 노력		20~17	16~13	12~9	8~6	5~1
계		100~85	80~65	60~45	40~30	25~5

※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(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)

- 합격기준

- 모집인원의 1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합격
- 동점자 발생 시 체력검정 고득점자 → 면접평가항목 ① → ② → ③ → ④ → ⑤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
- 면접점수(가점포함)가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

○ 최종합격

구분	미화직	경비직
①채용신체검사	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회사 지정병원에서 채용신체검사(공무원 기준) 실시	
②신원조회	-	(성)범죄 경력조회 실시
③경비원 신입교육	-	회사에서 실시하는 경비원 신입교육 수료자에 한해 최종임용(※기수료자 제외)
최종합격	① 합격자에 한해 최종임용	①~③ 합격자 및 수료자에 한해 최종임용

□ 임 용

- 임용 예정일: 2024.6.1. 자.(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)
- 수습기간: 3개월, 수습기간 중 보수는 100% 지급
 - 특별한 면직사유가 없을 시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으로 임용

□ 예비합격자 운용

- 목 적: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,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
- 인 원: 분야별 모집인원의 50%
 - 미화직 사원: 38명
 - 경비직 일반경비원: 3명
 - 경비직 특수경비원: 1명
- 유효기간 : 임용 예정일로부터 3개월(2024.8.31.까지)

□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

○ 구제방법

-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
 -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응시 기회 부여
 - 최종 면접전형의 피해자는 예비합격자 순으로 채용
-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
 -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

IV 채용 일정

구분	일정	비고
채용공고	2024.3.8.(금) ~ 3.28.(목)	· 회사,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·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, 워크넷 등
지원서 접수기간	2024.3.9.(토) 10시 ~ 3.28.(목) 15시	인터넷 접수
서류심사	2024.4.4.(목) ~ 4.5.(금)	-
서류전형 합격발표 및 체력검정 안내	2024.4.11.(목) ~ 4.12.(금)	일정 中 1일
체력검정	2024.4.18.(목) ~ 4.19.(금)	별도안내
체력검정 합격발표 및 면접안내	2024.4.24.(수) ~ 4.25.(목)	일정 中 1일
면접심사	2024.5.2.(목) ~ 5.3.(금)	별도안내
면접전형 합격발표	2024.5.9.(목) ~ 5.10.(금)	일정 中 1일
채용신체검사	별도 안내	-
최종합격자 발표	별도 안내	-
경비원 신입교육	별도 안내	-
임용일	2024.6.1.(토)	-

※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V

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접수방법

- 접수기간: 2024.3.9.(토) 10:00 ~ 3.28.(목) 15:00
- 접수방법: 인터넷 접수
 - 우편, 전자우편, 방문 접수 불가

□ 제출서류

○ 1차 제출서류(온라인 제출)

1.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서
2. 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(경비원, 교육 이수자에 한함)
3.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)

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에 한해 인정

○ 2차 제출서류(면접 당일 제출)

1.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중 1가지)
2. 주민등록등본
3.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만 해당, 병적사항 기재 필수)

※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

※ 제출서류는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에 한해 인정

VI

이의신청

- 접수기간 :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~ 익일 16:00

- 접수방법 : 전자우편(insa@cleanmetro.co.kr)

- 처리안내 : 검토 및 답변(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제외)

○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

- 해당 채용과 무관하거나 합격자 결정과 관계없는 채용제도, 절차 등에 대한 문의
- 타 응시자 및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
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
Ⅶ

응시자 유의사항

-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직·간접적으로 출신학교, 출신지,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(주)서울메트로환경 공개채용 전 분야에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고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서류 누락, 내용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채용비리 등 부정합격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(전자우편 제출서류 제외),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,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(02-6395-6592/6596)으로 문의바랍니다.

2024.3.8.

(주)서울메트로환경 사장